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안건

의안번호	제 38 - 2호
보고 일자	2019. 10. 17.

보고사항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시책과 동향

제출자	금융위원회 위원장
제출 일자	2019. 10. 17.

2019년 정기국회  
보고자료

---

#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시책과 동향

---

2019. 8.



금융위원회

본 자료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시책과 동향을 2019년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목 차

I. 금융중심지 정책의 추진 경과 .....	1
II. 금융중심지 정책 평가 .....	2
III. 금융중심지 시책과 동향 .....	5
1. 제4차 기본계획('17~'19) 개요 .....	5
2. 주요 추진실적('18.8월~'19.7월 기준) .....	10
(1) 자본시장 국제화 .....	10
(2)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	25
(3) 금융시스템의 국제정합성 제고 .....	39
(4) 금융중심지 내실화 .....	45
IV. 향후 금융중심지 정책 추진방향 .....	53

## I. 금융중심지 정책 추진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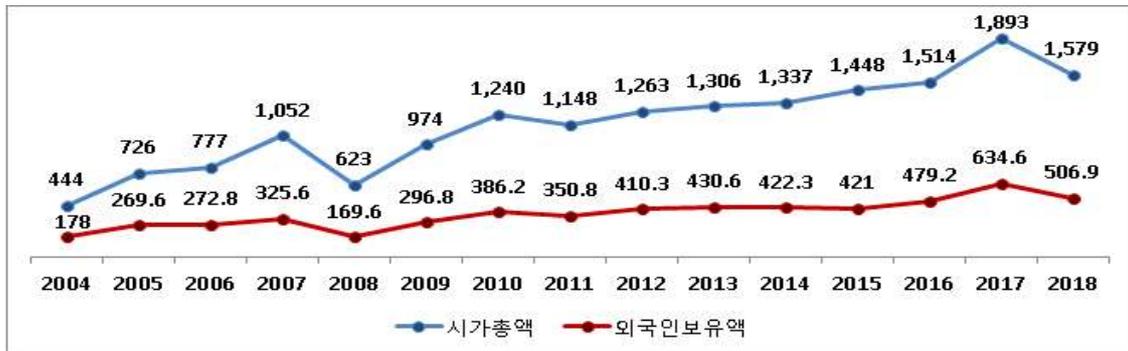
◇ 금융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03년부터 금융중심지 정책을 통해 금융시스템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진입 유도 등을 지속 추진

- '03.12월, 「동북아 금융허브 로드맵」을 수립하고 로드맵 1단계 전략('04~'07년)에 따라 금융허브 기반 구축 추진
  - 한국투자공사 출범('05.7), 자본시장통합법 제정('07.8) 등
  - '07.12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
  - '08.4월, 주요정책 심의를 위한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구성
    - \* 위원장(금융위원장) 및 정부위원 5인, 유관기관위원 6인, 민간위원 10인(총 21명)
- 4차례에 걸쳐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금융클러스터 구축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
  - '08.8월, 「제1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08~'10) 수립
    - \* 금융산업 선진화, 금융인프라 선진화, 자산운용시장 육성, 금융회사 집적 여건 조성
    - '09.1월, 서울(여의도) 및 부산(문현)을 금융중심지로 지정
  - '11.9월, 「제2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11~'13) 수립
    - \* 자본시장 고도화,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금융인프라 선진화, 금융중심지 조성 가속화
  - '14.10월, 「제3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
    - \* 국제경쟁력 있는 자본시장, 금융산업 국제역량, 국제적 금융인프라, 금융중심지 활성화
  - '17.10월, 「제4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17~'19) 수립
    - \* 자본시장 국제화, 금융산업 국제경쟁력 제고, 금융시스템의 국제정합성 제고, 금융중심지 내실화
- 현재,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통한 금융산업과 금융시장의 자율성과 역동성 제고 등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도모
  - 「제5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20~'22) 수립 추진 중

## II. 금융중심지 정책 평가

-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양적·외형적 성장은 어느 정도 달성
  - (자본시장) 규제완화를 바탕으로 금융투자산업의 역량이 강화되었으며 주식·채권시장 등 질적 성장도 지속

상장주식 시가총액 및 외국인 보유액(조원, 12월말 기준)



\* '18년 글로벌 증시는美中 무역분쟁 부각,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전반적으로 급락세 시현

- 주식 시가총액 및 상장회사 수는 세계 10위권으로 성장

시가총액 순위('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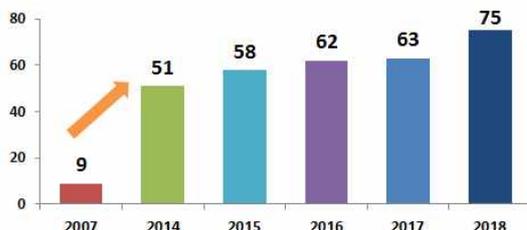
순위	국가	시가총액(조불)
1	미국	30.4
2	중국	6.3
3	일본	5.3
4	홍콩	3.8
5	프랑스	2.4
...	생략	
10	한국	1.4

상장회사 수 순위('18년)

순위	국가	상장기업 수(개)
1	인도	5,065
2	미국	4,397
3	일본	3,652
4	중국	3,584
5	캐나다	3,330
6	스페인	2,979
7	한국	2,186

- (자산운용) 사모투자 관련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자본 시장 참여자들의 고도화 및 펀드산업의 성장 달성

PEF약정액(조원)



일반사모펀드 운용액(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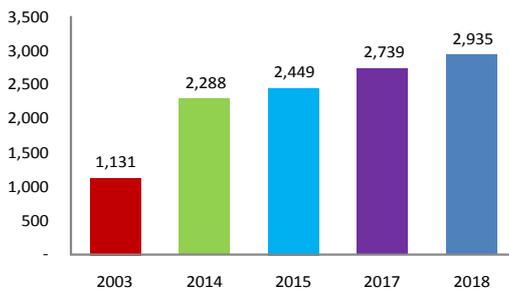
- 펀드시장 규모는 세계 13위 수준으로 아시아펀드패스포트 등이 시행될 경우 추가 확대 가능성도 높은 상황

지역별 펀드순자산 규모('18년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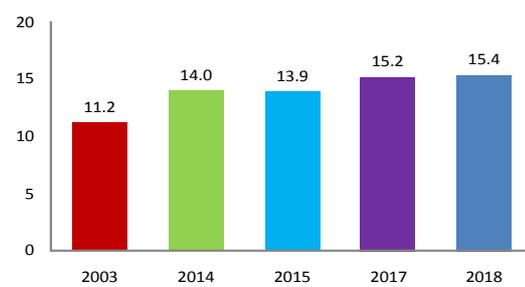
지역/국가	순자산액(USD십억)	시장점유율(%)	순위
<b>미주</b>	<b>19,603.3</b>	<b>52.1</b>	
미국	17,706.9		1위
캐나다	1,048.0		8위
기타	848.4		
<b>유럽</b>	<b>12,725.0</b>	<b>33.8</b>	
룩셈부르크	3,878.2		2위
프랑스	2,030.6		3위
기타(영국 아일랜드, 네덜란드 등)	6,816.2		5,7,9위
<b>아태지역</b>	<b>5,118.7</b>	<b>13.6</b>	
호주	1,946.4		4위
중국	1,684.0		6위
일본	657.5		11위
<b>한국</b>	<b>426.5</b>		<b>13위</b>
기타	404.2		
<b>아프리카</b>	<b>155.0</b>	<b>0.4</b>	
<b>합 계</b>	<b>37,601.9</b>	<b>100</b>	

- (은행산업) 자본확충 및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규모 확대와 자본적정성 개선 등 안정성 확보

국내은행 총자산(조원)



국내은행 BIS 비율(%)



- 이러한 정책의 결과 금융중심지 사업 추진('03년) 이후 금융 국제화 지표는 지속 개선 중

주요 지표	'03년	'18년	증가율(배)
○ 주식 외국인 보유액(조원)	143	507	3.5
○ 국채 외국인 보유액(조원)	0.5	86.6	173.3
○ 코스피200선물 외국인 투자비중(%)	16.36	64.7	4.0
○ 자산운용사의 해외투자 비중(%)	0.89	26.92	30.2
○ 해외 거래소 제휴(개)	-	77	-
○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개)	213	436	2.0

□ 다만, 우리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과 글로벌화는 지속적인 보완과 혁신이 필요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계 은행의 경우, 본점수익성 악화로 한국 뿐만 아니라 아시아·남미 등에서 전반적으로 철수 (바클레이즈, RBS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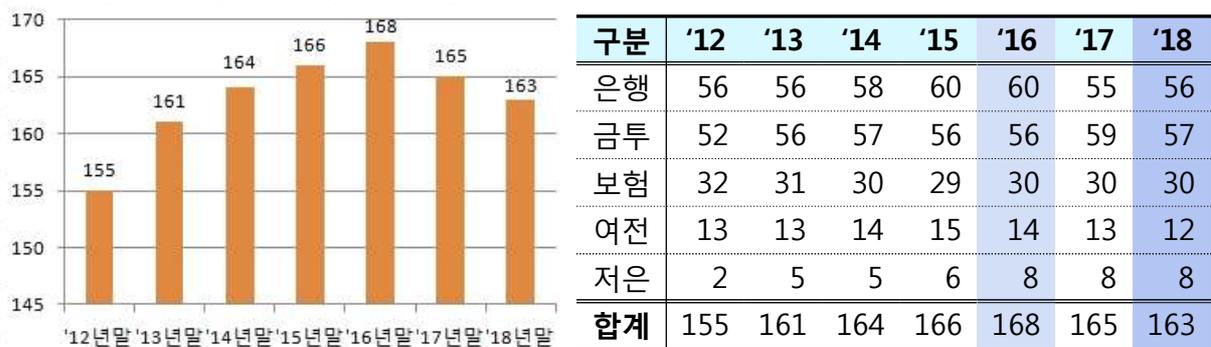
- 다만, 은행·증권업에 함께 진출한 외국계 은행의 경우 은행업무를 증권지점에 양도\*하여 영업규모가 상당부분 유지(골드만삭스, 맥쿼리 등)

\* 09년 규제완화로 증권지점에서 처리가능한 업무영역이 대폭 확대, 은행 업무 대부분을 증권업에서 중복 영위가능 → 은행·증권 통합 유인이 큼

○ 이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실질적인 철수가 거의 없었고\*, 현재 다수 회사가 국내 진입을 검토 중

\* 진입형태 전환, 인수·합병 등에 따른 변경이 대부분임

외국계 금융회사 국내 진입 추이 (연도말 기준)



○ 국내 금융회사 해외점포 수 및 자산·이익 규모는 확대되고 있으나, 그 상대적 비중은 아직 낮음\*

	'15년말	'16년말	'17년말	'18년말
해외점포수(개)	396	407	431	436
해외점포 자산(억달러)	1033.9	1130.9	1571.9	1789.7
당기순이익(백만달러)	493.3	657.4	934.1	1282.9

\* 국내은행 총자산 중 해외점포가 차지하는 비중  
('10년) 4.0% → ('12년) 4.2% → ('14년) 4.8% → ('16년) 5.1% → ('17년) 4.8% → ('18년) 5.1%

### Ⅲ. 금융중심지 시책과 동향

(※ 제4차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및 이행실적을 중심으로 작성)

## 1. 제4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17~'19) 개요

### 가. 목표·전략·추진과제

#### 목 표

### 금융시장 국제경쟁력 강화

#### 전 략

- 자금조달과 운용의 국제화 및 다양한 투자기회 제공
- 글로벌 금융회사 유치 및 국내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
- 생산적·혁신적 분야 금융지원 강화 및 금융의 4차 산업혁명 지원

#### 추진 과제

#### ① 자본시장 국제화

- 자본시장 조달기능 국제화
- 해외투자자 국내 접근성 제고
- 자본시장 고도화
- 자산운용시장 활성화
- 파생상품시장 경쟁력 제고

#### ②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 금융회사의 국제업무 확대
- 해외진출 활성화 및 내실화
- 금융의 실물연계 강화
- 핀테크 산업 발전 지원
- 외환제도 개선

#### ③ 금융시스템의 국제정합성 제고

- 금융인프라 국제정합성 제고
- 금융감독시스템 개선
- 외국계 금융회사 영업환경 개선

#### ④ 금융중심지 내실화

- 외국계 금융회사 집적 촉진
- 금융연관산업 발전 지원
- 국제 금융전문인력 양성

## 나. 추진방향

### 대과제 1 자본시장 국제화

- ① (자본시장 조달기능 국제화) 해외 기업들의 국내 주식시장 상장을 활성화하여 자본시장 국제화 및 안정적 성장 유도
  - 해외기업의 상장요건을 개선하고, 포괄주의 공시 확대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공시제도 마련
- ② (해외자금의 국내 접근성 제고)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해외 투자자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여 자본시장 활력 제고
  - 투자자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지수를 개발하고, 해외거래소 등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글로벌 금융상품 거래환경 조성
- ③ (자본시장 고도화) 생산적 부문으로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다양한 국내외 투자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자본시장 인프라 구축
  - 초대형 글로벌 투자은행 육성, 유망기업 중심의 상장·공모 제도개선 등을 통해 자본시장을 통한 모험자본 육성 및 공급확대
- ④ (자산운용시장 활성화)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국내유치 환경 조성 및 국민소득 증대를 위한 자산운용산업의 경쟁력 제고
  - 공모펀드 운용책임성 강화, 펀드판매채널 확대 등 자산운용 시장수요를 확충하는 한편, 저비용 자산관리사업모델 활성화, 개인연금 시장 활성화, 연기금 투자 활성화 등도 추진
- ⑤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국내외 투자자들의 다양한 위험 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파생상품시장 구축
  - 다양한 파생상품 출시, 투자자 진입규제 합리화 등 시장 경쟁력을 제고하고, 장외파생상품 위험관리체계도 구축

## 대과제 2

##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 ① (금융회사의 국제업무 확대) 은행·보험·자산운용사 등 국내 금융회사의 국경간 비즈니스 기회 확대
- ② (해외진출 활성화 및 내실화) 저성장·저금리 극복 및 新시장 금융주도권 선점을 위해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체계 재정비
  - 해외진출 관련 정보공유·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한 정례회의 운영, 금융인프라 수출지원, 금융세일즈 외교확대 등 추진
- ③ (실물연계 강화) 창의·혁신형 기업 등 경쟁력 있는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여 실물경제 발전을 통한 금융 서비스 수요 증대
  - 인프라 금융 활성화로 국내기업과 금융의 해외 동반진출 가속화
- ④ (핀테크 산업 발전 지원)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 출시 및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 마련
  -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시행,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용 지원 등을 통해 핀테크 산업 경쟁력 제고
  - 핀테크 협력 MOU 체결, Demo Day 개최 등을 통해 국내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 ⑤ (외환제도 개선) 대내외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외환거래 편의 제고 및 금융업 발전을 위한 외환제도 개선
  - 외환거래 신고 및 확인절차를 간소화하고, 대외채권 회수 의무를 세이프가드 조치로 전환하여 외환거래 편의 제고
  - 해외송금업 영위를 핀테크업체 등 비금융회사에게 일부 허용

- ① (금융인프라 국제정합성 제고) 금융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정비하여 외국계 금융회사의 규제순응비용을 경감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
  - 금융규제의 국제기준 마련을 위한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글로벌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금융규제의 국제정합성 제고
    - \* 부실금융기관의 효과적 정리를 위한 정리체계 마련 추진 및 그림자금융, 장외파생상품 규제 등에 대해 국내 여건을 반영한 규제 개선방안 마련
  - 자금세탁 방지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국가차원의 자금세탁 위험평가체계를 구축하는 등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국제정합성 제고
- ② (감독시스템 개선) 원칙 중심(principle-based) 금융규제 체제로의 개편을 지속 추진하고, 금융사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금융감독시스템 구축
  - 건전성 검사 및 기관·금전제재 중심으로 전환하는 검사·제재개혁을 지속 추진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강화
- ③ (외국계 금융회사 영업환경 개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실질적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채널 및 애로사항 처리 체계 강화
  - 외국계 금융회사의 애로사항을 상시수렴하고 건의·제안사항을 DB화하여 체계적 관리 및 실질적 제도개선 추진
  -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통해 외국계 금융회사에 금융관련 제도 및 인허가 절차 등을 안내하는 등 전담 지원서비스 강화

## 대과제 4

## 금융중심지 내실화

- ① (외국계 금융회사 집적 촉진) 매력적인 경영·생활환경 조성 및 금융홍보 내실화를 통해 외국계 금융사 유치·정착 지원
- 금융 관련 인프라 개선 및 외국인 친화적 생활환경 조성, IR 및 국제컨퍼런스 개최 등을 통한 소통 강화 등 지속 추진
  -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자체 상호간 효율적 역할분담체계 구축
    - 정부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 금융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금융중심지(서울·부산)는 지역별 특화전략을 수립·추진

서울	▪ 종합 금융중심지로서 금융 인프라를 지속 구축함과 동시에 핀테크 산업 등 글로벌 금융 트렌드에 부합하는 전략 수립
부산	▪ 해양·선박·물류산업을 활용하여 해양·파생상품에 특화된 지역 금융중심지로의 발전전략 수립

- 국부펀드를 활용\*한 해외위탁운용사 국내 유치 활성화 등
- \* 해외채권 위탁운용사 선정시 일정금액에 대해 국내진출 운용사만 참여토록 한정

- ② (금융연관산업 발전) 회계·신용평가 등 금융연관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신뢰성을 제고하여 원활한 국제금융거래 촉진

- 외부감사 기능을 정상화하고 신용평가의 신뢰성과 신평사의 독립성을 제고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기반 마련

- ③ (국제 금융전문인력 양성) 금융인력 양성, 지역간 금융인력 교류 활성화 등으로 금융중심지 생태계 조성

- 우수한 글로벌 금융인력이 지속적으로 양성·유입될 수 있도록 금융전문인력 양성 지원
- 서울·부산 금융중심지의 금융전문가들이 활발한 교류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네트워크 형성 환경제공

## 2. 주요 추진실적 ('18.8월~'19.7월 기준)

### 대과제 1

### 자본시장 국제화

#### 1. 자본시장 조달기능 국제화

##### 가. 해외기업 상장요건 개선

- 외국 우량증권의 공급을 통한 자본시장의 국제화 및 안정적 성장을 위해 해외기업의 상장을 활성화
  - 국내 중소기업만 신청 가능했던 기술특례상장 이용 가능 기업을 해외 진출기업도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 확대('19.6월)

##### 나. 공시요건의 국제적 정합성 강화

- 포괄주의 공시 가이드라인 제작·배포(코스닥)
  - 공시의무가 적용되는 '중요정보' 해당 여부를 상장법인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공('18.5월)
    - \* 중요정보 판단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코스닥시장의 주요 업종(제약·바이오, 엔터, 게임 등)별로 포괄조항 공시 예시 제공
- 상장법인 대상 포괄주의 공시제도 교육·제도 강화
  - 상장법인 업종별 및 지역별 간담회 등을 통해 포괄주의를 비롯한 최근 공시제도 운영방향에 대해 안내·제도
    - \* 업종별 간담회 4회(금융, 화학, 건설, 제약) 및 지역별 간담회 3회
  - 상장법인 대상 방문교육, 신규상장법인 공시담당자 교육 과정 등을 통해 공시운영에서 기업 자율·책임성 강조
    - \* 상장법인 공시담당자 교육 총 84회, 상장법인 방문교육 총 34회 실시

□ 포괄주의 공시정보 확대를 위한 공시현황 분석(유가·코스닥)

- '16.5월 포괄조항을 도입한 이후의 포괄주의 공시 운영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투자자 등에 소개\*

\* 2018년 유가·코스닥증권시장 포괄공시 실적(한국거래소 보도자료, '19.1.14)

- (유가증권시장) '18년중 특허권 취득, 본 계약 이전 낙찰자/시공자 선정,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등을 내용으로 336건 제출 ['17년(276건) 대비 21.7% 증가]
- (코스닥시장) '18년중 임상시험 승인, 기술이전계약, M&A 관련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특허권 양수 등 124건 ['17년은 133건]

□ 지배구조 공시제도 개선(유가)

-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형 상장사에 대해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규정 개정('18.12월)
-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대상 기업간 비교 가능하고 충실한 정보 공시를 위해 필수 공시사항 등을 규정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 마련('19.4월)

## 2. 해외투자자의 국내 접근성 제고

### 가. 국제경쟁력 있는 지수 개발·보급

#### ① 코스피200, KRX300 등 대표지수의 상품성 강화

- 코스피200 섹터선물을 활용한 파생상품지수 40종\* 개발('18.9월)

\* 코스피200 섹터(10개)별로 섹터선물지수 및 레버리지/인버스 전략지수

- KRX300의 라인업을 확대하고 KRX300의 상품성 강화를 위해 KRX300 섹터지수 8종 개발('18.8월, '19.3월 발표)

- KRX300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구조화 ETF상품으로 개발된 KRX300 미국달러혼합지수 발표('18.8월)

## ② 옵션을 활용한 고도화된 파생전략지수 개발

- 유동성이 높은 코스피200 옵션을 활용하여 시장상황별로 수익추구전략을 수행하는 **옵션전략지수 8종\*** 개발

\* 코스피200 인핸스드 콘도르 2종('18.8, '18.12), 듀얼 양매도 2종('18.8), 변동성매칭 양매도('18.10), 변동성추세 추종 양매도('18.10), 추세추종 옵션 마운틴('18.12), 월별 양매도('19.4) 발표

- 기본 양매도전략에 코스피200의 변동성을 반영하여 수익성 및 안정성을 향상시킨 새로운 유형의 전략지수 개발

## ③ 총수익지수 확대

- 대표지수, 배당지수, 종합시황지수 관련 총수익지수 7종\* 발표('18.12월)로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투자성과평가 가능

\* 코스피 TR, 코스닥 TR, KRX300 TR, 코스닥150 TR, KRX 고배당 TR, 코스피 고배당 TR, 코스피 배당성장 TR

## ④ 다양한 상품을 활용한 ELS용 구조화 전략지수 개발

- 국내 주가와 달러환율간 음(-)의 상관관계를 이용한 코스닥 150 미국달러 현선물혼합지수 발표('18.10월)
- 코스피200보다 높은 수준의 지수변동성(연율 24%)을 이용하는 코스피200 현선물 목표변동성 24%지수 발표('18.8월)

## ⑤ 주식, 채권시장의 다양한 투자전략을 반영한 지수 개발

- 코스피200내 초대형 주식을 전략적으로 제외하여 다양한 전략을 수행하는 코스피200 초대형제외 지수 발표('18.11월)
- 장단기금리차의 확대/축소를 활용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국채선물 스프레드 전략지수 4종\* 발표('19.6월)

\* 국채선물 3년/10년 일드커브 스티프닝(1X, 2X), 플랫닝(1X, 2X)

## ⑥ 글로벌 트렌드의 ESG지수\* 개발 등 지수사업 국제화 추진

\* ESG지수 :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책임(Social Responsibility), 지배구조(Governance)를 고려한 지수

- 자본시장에 ESG환경을 조성하고, 시장흐름 추종을 통해 지수의 상품성을 강화한 코스피200 ESG지수 개발('18.12월)
- 한·대만 IT 프리미어지수에 기반한 “Korea Taiwan IT Premier Index ETN” 유럽거래소(유로넥스트 파리)에 상장('18.10월)

## 나. 글로벌 주요 시장과 협력 추진

### □ 해외거래소와의 연계 강화

- 콜롬보거래소 방문 공동 워크숍 실시('19.4월)를 통해 국내 상장제도 및 공시제도·시스템 소개
- 일본거래소그룹(JPX), 대만거래소(TWSE)와 한국거래소 3국간 공동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CEO정례미팅('19.3월), 3국 ESG투자환경 발전을 위한 워크숍 실시 추진('19.9월)

### □ 해외 유관기관 등과 협력 강화

- 해외 거래소 및 증권시장 관계자 방문 연수, 중남미 금융 관계자 초청연수 등을 통해 자본시장 제도·현황 홍보
  - ('18년) 스리랑카 중앙은행(8.30), 캄보디아 증권위원회(9.19), 동아시아 금융부처(10.18), 베트남 증권위원회(10.19), 대련상품거래소(11.01), 베트남 재무부(11.7), 베트남 증권연구교육원(12.17) 등
  - ('19년) 상해증권거래소(1.18), UN PRI(4.17), 인도네시아거래소(4.25), 중국 청도시 공무원(5.14),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6.20~21) 등
- 제37차 AOSEF 싱가포르총회 참석('19.4월)을 통해 아시아 거래소간 이슈 공유 및 향후 발전방안 마련 추진
- \* '20년 제38차 AOSEF 부산총회 개최 예정('20.4월)으로 아시아 거래소 교류 증진 및 부산의 국제금융중심지 발전 도모 예정

### 3. 자본시장 고도화

#### 가.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

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200%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18.9월)

\* 다만, 기업금융업무 관련 신용공여,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를 제외한 신용공여는 자기자본의 100% 한도로 제한

- '19.2월말 기준 총 7개 종투사의 기업 신용공여 총액은 10.0조원으로 '13년말 0.4조원 대비 크게 증가

< 종합금융투자사업자 기업 신용공여 추이(단위: 억원) >

'13년말	'14년말	'15년말	'16년말	'17년말	'18년말	'19.2월말
3,865	7,743	20,851	19,194	48,515	105,751	100,021

②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외화 발행어음\* 업무 허용('18.11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 1년 이내의 단기 외화 자금조달 수단으로 기업금융(50% 이상 의무) 등 생산적 금융에 활용 가능

③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단기금융업 인가

○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 5개사\*, 3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 3개사\*\* 지정(총 8개사)

\* 미래에셋대우, NH, KB, 삼성, 한국투자('17.11.17)

\*\* 신한금투('17.3.14), 메리츠('17.11.28), 하나금융투자('19.7.10)

○ 단기금융업 3개사 인가

\* 한국투자증권('17.11.17), NH투자증권('18.6.5), KB증권('19.5.15)

## 나. 상장·공모제도 개선

- 장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자본시장에서 보다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
  - 업종별로 차등화된 상장심사 기준 적용('19.6월)
    - 4차 산업 업종\*에 대해 기업계속성 심사 항목 중 영업상황, 기술성, 성장성 항목을 혁신성 요건 위주로 개선
      - \* 중소기업부가 선정한 20개 분야 152개 전략 품목
    - 바이오 기업\*에 대한 '기업계속성' 심사 항목 중 기술성 항목을 바이오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체화
      - \* 국가기술표준원의 바이오산업 분류 및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신약연구개발 전문 업종
  - 우수 기술기업 기술특례 상장 활성화('19.6월)
    - 기술특례상장 이용 가능기업에 스케일업 기업\*도 포함
      - \* 2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20%이상인 非중소기업
    -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등급이 높은 경우(AA 이상) 거래소의 기업계속성 심사 중 기술성 심사를 면제

## 다. 단기자금시장 활성화

-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지표 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입법 추진
- 국무회의 의결('18.10월)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의 신속한 제정 노력 추진

###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 ◆ (금융거래지표 정의) 금융거래 및 금융상품의 지급액 또는 가치 등을 산정할 때 쓰이는 준거
- ◆ (중요지표 산출기관 등록) 중요지표 산출기관은 1) 산출방법 및 그 공개·관리 2) 산출업무 내부통제 3) 제출업무 점검·개선 등 체계 갖춰 금융위 등록
- ◆ (지표관리 의무) 중요지표 산출기관은 산출관련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준수여부를 점검
  - 중요지표 산출과정에서 왜곡, 조작 등 부정한 방법 사용이 금지되며, 위반시 과징금, 벌칙, 손해배상 등 책임 부여

□ RP시장의 유동성 리스크 관리 등 시장 건전성 제고를 통한 관련시장 활성화 유도

○ 차환리스크 관리를 위해 RP 만기에 따라 현금성 자산 보유비율의 차등 한도\* 설정 추진('20년까지)

\* (예) 익일물은 10%(과도기간인 '19년말~'20.2분기), → 20%('20.3분기 이후)

○ RP 매수자는 담보증권 특성과 매도자의 신용위험이 반영된 최소 증거금을 마련 근거 신설('19년 중 시행령 개정 추진)

## 4. 자산운용시장 활성화

### 가. 자산운용시장 수요 확충

□ 운용책임성 강화를 위해 신규 공모펀드(증권형펀드)는 성과 연계형으로 설정토록 하는 행정지도를 연장 실시 ('19.5월)

□ 서민형 ISA의 가입기한 일몰을 연장('18년말→'21년말)하고, 소득인정기간을 확대\*함으로써 가입대상 범위 확대('19.1월)

\* 소득인정기간 확대 : (기존) 당해·직전연도 → (개선) 당해·직전 3개연도

## 나. 저비용 자산관리사업모델 활성화

- 로보어드바이저 업체의 사업화 기반 확대를 위해 규제 개선
  -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체결이 가능한 일임업자의 자기자본 요건(40억원) 폐지('19.3월, 금투업규정 개정)
  -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재산 직접 운용 허용('19.4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 로보어드바이저 업체에 펀드·일임재산 운용 위탁 허용('19.5월, 금투업규정 개정)
-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시행 및 다양성 확대
  - 4차('18.9월 ~ '19.5월), 5차('18.12월 ~ '19.8월(예정)), 6차('19.3월 ~ 11월(예정)) 테스트베드 등 테스트베드 지속 실시
  - 다양한 로보어드바이저가 테스트베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 참여대상 확대(법인만 가능 → 개인도 허용)('19.6월)

## 다. 개인연금 시장 활성화

-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19.7월, 세제개편 방안 발표)
  - 노후연금 활성화를 위해 ISA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 허용\* 및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전환금액의 10%, 300만원 한도) 확대\*\*

\*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 확대

(현행) 연 1,800만원 이내 → (개정) 현행 + ISA 만기계좌 금액

\*\*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현행) 연금저축 300~400만원(퇴직연금 합산시 700만원)

(개정) 현행 + ISA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금액 × 10%(300만원 한도)

- 노후대비 필요가 큰 50세 이상자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

\* 총급여 1.2억원(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현행 공제한도 유지

## 라. 연기금 투자 활성화

### 국민연금

#### ① 해외·대체투자 비중 확대 및 전략 다변화

- 국민연금 수익성 제고를 위한 해외·대체투자 비중 확대

\* ('17년) 32.0% → ('18년) 35.7%

- 해외투자·대체투자 확대 등 투자다변화 기조 하에서 '20 ~ '24년 국민연금 중기자산배분\*(안) 마련('19.5월)

\* '24년까지 해외투자 50% 수준으로 확대

#### ② 해외·대체투자 리스크 관리체계 강화

- 금융공학 모델을 활용한 전문적 리스크 분석 및 관리를 위해 리스크관리센터 내 계량분석소팀 설치·운영('18년)

- 정보화 시스템 도입을 통한 리서치 역량 강화로 대체투자 사전·사후적 위험 대응체계 고도화('18년)

\* 헤지펀드 리스크분석 솔루션 시스템(Risk aggregation), 전세계 경제·산업 통합 리서치 시스템(Oxford Economics) 등

- 전체 환헤지 오픈(~'18년) 및 통합 외환 익스포저\* 관리

\* 외환의 변동성 리스크에 노출된 투자 규모

\*\* 통합 외환익스포저 관리체계 연구용역 수행('18년) 및 결과 검토

### ③ 해외·대체투자 인프라 강화

- 해외사무소의 기능 강화방안 (리서치 중심→실제 투자실행) 및 인력 추가 확충\* 등 검토

\* 해외사무소 현지채용인력 추가 증원(6명) '20년 예산 요구안 반영

## 사학연금

### ① 연차별 전략적 자산배분계획 실행

- 중장기(2019~2023) 전략적 자산배분계획 수립('18.8월)

\* 해외·대체투자 배분비중 확대 : 43.6%(2019년) → 52.2%(2023년)

- 2019년 자금운용계획 수립('18.12월)

#### 사학연금 중장기('19~'23) 전략적 자산배분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국내채권	34.0	32.4	32.2	31.1	30.3
해외채권	5.2	4.6	4.1	3.3	3.0
국내주식	22.4	22.0	19.5	18.5	17.5
해외주식	16.7	17.0	17.7	18.9	19.5
국내대체	10.8	11.5	12.0	12.8	13.0
해외대체	10.9	12.5	14.5	15.4	16.7
합 계	100	100	100	100	100

### ② 성과평가 합리성 제고 및 해외투자역량 강화방안

- 해외주식 성과평가 벤치마크 개선('19.1월)

\* (변경 전)MSCI ACWI → (변경 후)현행 벤치마크+배당수익률(NR)

\* 운용 포트폴리오와 달리 배당수익률이 미 반영 된 부분 개선

- 해외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금융교육

\* 해외금융시장전망, 글로벌인프라투자 세미나 등 총 106회(188시간) 교육 참여

○ 해외투자 확대 및 해외운용자산 관리 강화

- \* 해외투자 비중 확대 : 29.2%('18년) → 32.3%('19.6월)
- \* 리스크 한도 및 측정 체계, 위기상황 모니터링 체계, 성과평가 체계 개선과제 발굴 및 고도화 방안 마련
- \* 통합적 위험관리를 위한 비상계획 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국내 및 해외 투자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2017		2018		2019.6월 말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국내	채권	59,405	37.5	59,544	37.1	61,061	34.7
	주식	42,028	26.5	34,388	21.5	36,701	20.8
	대체	16,543	10.4	17,233	10.7	20,094	11.4
	현금성	1,089	0.7	2,385	1.5	1,334	0.8
	계	119,065	75.2	113,550	70.8	119,190	67.7
해외	채권	9,733	6.1	9,967	6.2	10,526	6.0
	주식	20,720	13.1	22,672	14.1	29,275	16.6
	대체	8,886	5.6	14,122	8.8	17,045	9.7
	계	39,339	24.8	46,761	29.2	56,846	32.3
합 계		158,404	100	160,312	100	176,036	100

**공무원연금**

① 해외투자의 다변화 및 신규투자 활성화 노력

- 해외운용사의 다양한 펀드를 지속적 발굴, 지역비중 조절 전략으로 스타일 다각화 및 위험분산
  - 해외채권 ETF 신규투자 : 계획 3천억원 중 1,900억원 집행
  - 선진국 중심의 경제성장에 대응, 글로벌·선진국 비중 확대
- 사회책임투자형 해외주식 및 고금리 구조화채권 등 신규 수익원 발굴로 투자 다각화
  - \* 연기금 최초 해외 책임투자형 자문형 펀드 투자 추진(하반기 1,000억원)

## ② 자산군별 · 지역별 대체투자 대상 다변화

- 대체투자 규모 확대를 통하여 포트폴리오의 안정성 제고
    - ('17년) 11,316억원(15.6%) → ('18년) 15,154억원(19.5%) → ('19. 6.) 16,632억원(19.5%)
    - 해외투자 지역 다양화를 통한 지역별 투자집중도 완화
- \* 해외대체 비중 : '17년 45.3% → '18년 51.2% → '19.6월 51.5%

< 대체투자 자산군별 · 빈티지별 · 지역별 분산투자('18말) >



- 신규 대체투자자산 발굴을 통한 투자 다각화
  - (국 내) 안정적 현금흐름이 수반되는 우량 프로젝트 투자
  - (국 외) 금리변동 리스크 헤지효과가 높은 Private Debt펀드, 경기하방리스크 관리를 위한 글로벌 절대수익형 신규투자

### 해외 · 대체투자 실적 및 계획

(단위 :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6월	2019년 계획	2020년	2024년
채 권	국 내	41.9	41.0	39.4	37.8	35.8	28.0
	해 외	4.8	5.9	7.4	7.8	8.9	13.5
	소 계	46.7	46.9	46.8	45.6	44.7	41.5
주 식	국 내	28.1	22.0	21.2	22.7	20.6	12.0
	해 외	9.6	11.6	12.5	11.5	12.1	14.5
	소 계	37.7	33.6	33.7	34.2	32.7	26.5
대체투자		15.6	19.5	19.5	20.2	22.6	32.0
중장기자산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20 ~ '24년 포트폴리오는 중기 전략적 자산배분계획 반영

## 군인연금

### ① 기금 운용자산의 수익률 제고 및 투자자산 다변화 추진

- 주간운용사 상호 간의 경쟁을 통해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한 기금의 자금배분 평가기준\* 개선('18.9월)

\* [기존] 기존상품별(채권형, 주식형, 혼합형) 평가 → [개선] 세부 자산군별 (국내채권형, 국내주식형, 해외채권형, 해외주식형, 대체투자) 평가

- 단기자산 중 수익률이 낮은 현금성자금을 최소화하고 투자자산 다변화를 위해 유동성자금 펀드\* 도입('19.2월)

\* 만기매칭형 CP(기업어음) 상품 시범 도입·운용(100억원, '19.2~'19.5)

### ②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성과평가 및 리스크 관리 강화

- 자산운용 성과평가 기관을 매년 선정하여 외부위탁거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수시로 실시

- 성과평가와 리스크 관리의 전문성, 독립성을 강화하고 의사결정체계 고도화를 위해 위원회\*를 별도 분리('19.5월)

\* (기존)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위원회 → (개선) 위험관리위원회, 성과평가위원회

### ③ 연기금투자플 위탁운용 지속 추진 및 규모 확대

- 위탁액: '18.6월 8,045억 → '19.6월 8,307억 (3.3%증가)

## 마. 고령화 대비 신탁업 체계 개편

- 신탁업자의 위탁매매비용 수취제한 완화 등 과도한 규제 개선('19.3월 현장불편규제 혁신방안 발표)

- 특정금전신탁 비대면 판매를 허용하고, 기타 투자자 불편 최소화를 위한 규제를 개선\*('19.3월 현장불편규제 혁신방안 발표)

\* 투자자 투자성향분석주기 : 매분기 → 연1회로 완화  
신탁운용보고서 교부방법 : 서면·전자우편 → 문자·앱 등으로 다양화 등

## 5. 파생상품시장 경쟁력 제고

### ① 장내 파생상품 시장 경쟁력 제고

#### ○ 다양한 파생상품 상장 (~'19년)

- 해외지수 기초 ETF선물(Tiger 차이나CSI300) 상장으로 해외 시장 위험관리수단 강화 ('18.9월)

- 개별주식선물(4종목)\* · 옵션(2종목)\*\* 신규종목 상장으로 개별 기업 위험관리 및 시장간 연계거래 강화('19.7월)

\* 선물 : (유가) HDC현대산업개발, 일진머티리얼즈, 한올바이오파마, (코)JYP Ent.

\*\* 옵션 : (유가) 삼성SDI, NAVER

※ 주식선물(134 → 138종목), 주식옵션(31 → 33종목)

- 코스피200 위클리옵션 상장을 위한 파생상품시장 업무 규정 개정('19.7월 규정개정 → '19.9월 상장예정)

#### ○ 개별주식옵션 활성화

- 주식선물·옵션 호가한도수량을 일괄 2천 계약에서 종목별로 3단계(1천/2천/1만)로 차등화\*('18.9월)

\* 기초자산별 주가수준을 감안하여 호가한도수량을 구분

- 주식선물·옵션 미결제약정 보유한도 상한(30만 계약)을 폐지하여 액면분할 등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개선('18.9월)
- 주식옵션의 결제월을 최장 3년(9개)에서 최장 1년(6개)으로 축소하여 근월물 유동성 집중 도모 ('18.9월)

#### ○ 투자자 접근성 제고

- 외국인통합계좌의 킬스위치 기능\*을 기존 계좌단위에서 최종투자자 단위로 확대하여 투자자 위험관리 강화('19.7월)

\* 알고리즘거래에 대하여 주문오류 등 발생할 경우, 기제출한 주문을 일괄하여 취소하는 기능

- 투자경험이 충분한 전문개인투자자\*의 기본예탁금 면제를 위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개정 ('19.7월 규정개정 → '19.11월 시행예정)

\* 전문개인투자자와 동일한 수준의 기본예탁금(5백/1.5천/3천만원 이상)을 적용받았던 기관투자자(일반법인 포함)도 기본예탁금 폐지 추진

## ② 장외 파생상품 위험관리체계 구축

- 국내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장외파생상품 자율청산 대상 단계적 확대 검토·추진

- 청산회원 대상 기존 설문조사('18.4~5월)에 기반하여 청산 대상상품 확대방안 마련('18.12월)

- 원화IRS 청산만기연장(20→30년) 관련 추가 설문조사 실시 ('19.5.14~17.) 및 도입 검토('19.5~6월)

**1.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및 금융회사 국제업무 확대****가. 은행의 국제업무 활성화**

- 은행 부수업무 및 본질적업무 위탁범위 확대를 통해 은행 업무경쟁력 강화 지원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은행이 알뜰폰사업\*을 부수 업무로 영위하고 drive-thru 환전·인출\*\*이 가능하도록 허용
    - \* 국민은행('19.4.17일 지정)      \*\*우리은행('19.5.2일 지정)
  - 지정대리인 제도를 통해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 시세 산정\*, AI를 활용한 대출심사\*\* 등의 업무를 핀테크업체가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
    - \* 빅밸류, 공감랩('19.6.12일 지정)      \*\* 핀테크('18.9.14일 지정) 등

**나. 보험업 경쟁력 강화****① 일반보험 국제경쟁력 강화**

- 가계성보험 및 기업성보험 정의를 신설하고, 기업성보험 등에 통계요율 이외의 보험요율을 활용할 수 있음을 규정
  - 또한 참조순보험요율을 할인 또는 할증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화('18.11월)
- 국내 손해보험사의 기업성보험 언더라이팅(인수심사) 기능 제고 및 과도한 재보험 출재 리스크 완화 등을 위해 일반 손해보험에 대해서는 개별계약별로 보험료의 최소보유 비율(10%) 기준을 도입('18.11월)

- 경영공시기준을 보유보험료 중심으로 개선하여 보험사의 실질적인 위험보유 정보를 시장·소비자에 제공('18.7월)

## ② 전기자동차 등 새로운 이동수단 지원

- **첨단안전장치**(차선이탈경고장치, 전방충돌방지장치 등) 장착 차량 등에 대해 특약 가입을 통해 **보험료 할인**(1~8%) 제공
- **개인이동교통수단\***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상해·배상책임·기타비용손해**를 보상하는 '퍼스널모빌리티상해보험' 출시
  - \*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전기자전거, 세그웨이(Segway) 등 전기가 주동력인 1~2인용 소형 개인 이동수단
- **자율주행차 활성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고기록장치 장착의무화, 민간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국회 국토위 계류 중

## ③ 단종보험 활성화

- 소규모·단기보험 등 **소액단기보험사의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하도록 보험업법 개정 추진\*
  - \* (현행) 50~300억원 → (개선) 10~30억원 / 19.2.15일, 의원입법안 발의

## ④ 보험산업 자율성 강화

- **(약관) 보험약관의 작성·검증·평가 체계 개편**을 통하여 불합리한 약관내용을 개선하고,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약관용어, 문구를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 추진
  - \* ① 금융위, 금감원, 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및 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보험약관 제도개선 TF 구성('19.1월), 보험약관 간담회 개최('19.2월)
  - ② 실무회의 구성('19.4월) : 현행 약관에 대한 종합 검토 및 개선방안 도출

- (자산운용) 외화자산 등에 대한 사전적 투자한도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 추진

\* '17.5월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제출 이후 법안 통과 노력 지속

## 5] 글로벌 건전성 규제체계 도입

-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시기('22년 예정) 등을 고려하여, 보험사 리스크 관리를 위한 자본건전성 제도개선 추진

\*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회의('18.11월, '19.6월)를 통해 충분한 사전영향평가 등을 통한 신지급여력제도 도입방안 마련 추진

## 다. 자산운용사의 국제업무 활성화

-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제출 ('18.6월) 이후, 법률안 통과 대비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안 마련을 위한 유관기관 TF\* 구성('18.8월)

\* (구성) 금융위, 금감원, 금투협, 판매사·운용사, 법률전문가 등

- 아시아 펀드패스포트 5개 회원국(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태국)간 협력증진을 위한 합동위원회 국내 개최('19.5월)
- 이와 더불어, 컨퍼런스 개최 등을 통해 국내 자산운용 업계의 펀드 패스포트 제도 이해 도모('19.5월)

## 2. 해외진출 활성화 및 내실화

### 1] 금융협력관련 행사 개선

- 한-아르메니아 금융협력세미나('19.5월), 한-베트남 부총리회담 ('19.6월) 참석 등 금융당국간 네트워크 강화 및 협력 수요 발굴
- 사우디 부총리 방한('19.6월), 한-베트남 부총리회담('19.6월)을 계기로 양국 금융분야 협력강화를 위한 MoU 체결

## ② 금융기관간 협업기회 창출

- 해외금융협력협의회를 통해 공동연수사업\*, 초청강연\*\* 등을 추진함으로써 기관간 정보공유 기반 구축

\* 미얀마 고위공무원 초청연수 지원('18.8월), 라오스 재무부 초청연수 지원 ('18.10월), 태국 자산관리공공기관 초청연수 지원('19.7월) 등

\*\* 캄보디아 금융환경 분석 관련 전문가 초청세미나('18.8월), 아시아개발은행 (ADB) 초청세미나('19.4월) 개최

- 금융분야 대외협력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기관별 해외진출 수요, 국제행사 계획, 현장 애로사항 등 공유

## ③ 금융인프라 수출 지원

- 국제금융협력포럼('18.12월)을 통해 금융기관들의 대외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금융인프라 수출 기반 마련

\* 라오스, 라오스, 키르기스스탄, 네팔, 미얀마, 태국, 인니, 베트남 금융당국 등과 네트워크 구축

- 기재부, 외교부 등의 ODA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금융인프라 해외진출 지원

\* KSP 금융인프라 사업 ('18)나이지리아 파생상품 시장 역량개발사업, 온두라스 신용보증시스템 역량강화사업 등 ('19) 키르기스스탄 예금보험제도 강화 등

## ④ 해외 네트워크 확대

- 태국·베트남 고위급 면담을 통해 양자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현지 진출 금융회사 애로사항 전달

\* '19.3월 태국 중앙은행 총재·6월 베트남 중앙은행 부총재

- 금융위원장 주한아세안대사 만찬 간담회('18.11월)를 통해 아세안 국가와의 금융 네트워크 강화

## 5] 해외진출 관련 정보제공 확대

- 해외진출 수요가 많은 국가의 감독당국 초청 설명회 개최 및 현지 감독당국 방문 면담 등을 통한 정보제공
  - \* 태국 중앙은행 인허가 담당자 초청 면담('18.11월), 中 CBIRC(은보감회) 방문 면담('18.10월),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및 증권위원회 방문 면담('18.12월)
- 해외진출 수요가 많은 국가의 인허가 제도 등 현지 정보 제공을 위해 업무편람 발간
  - \* 「베트남 은행업 감독제도 편람」 발간('18.12월)
- 해외점포 설립 상담 등과 관련하여 금융중심지지원센터 홈페이지에 「1:1 상담창구」 개설('18.12월)
- 국내 금융회사의 성공적인 신남방 국가 진출 사례 및 신남방 국가 감독당국의 감독정책 등을 공유하기 위해 '국내 금융회사 신남방 진출 지원 간담회 개최'('19.4월)

## 3. 금융의 실물연계 강화

### 가. 생산적·혁신적 분야 금융지원 강화

#### □ 기술금융 활성화

- 기술금융 대출·투자 공급계획을 대폭 확대하여 '18년까지 대출 100조원, 투자 1조원 공급(결성액 기준) 추진
  - (대출) 창업·중소기업의 기술력 평가에 기반한 은행권 기술신용대출 총 123.3조원 공급\*(평가액기준, '19.4월 기준)

\* '18년말까지 당초 목표였던 100조원 공급은 초과달성('18년말 기준 112.2조원)

- (투자) 기술금융 투자의 경우, 기술금융 펀드 투자 및 은행의 자체 기술금융 투자 모두 지속적 확대

※ 기술금융 투자펀드(억원) : ('16) 2,342 → ('17) 4,869 → ('18) 7,448  
 은행 자체투자(억원) : ('16) 5,275 → ('17) 11,703 → ('18) 24,106

- 기존 기술금융 대출의 부도변별력 등 데이터 유효성 검증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19.7월)

#### □ 크라우드펀딩 제도 개선

- 크라우드펀딩 투자경험이 많아 이해도가 높은 일반투자자를 적격투자자로 인정하여 연간 투자한도\*를 확대('19.1월)

\* 투자자별 연간 투자한도 : (일반투자자) 기업당 5백만원, 총 1천만원, (적격투자자) 기업당 1천만원, 총 2천만원, (전문투자자) 제한없음

- 창업·벤처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1년 동안 모집할 수 있는 금액을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

- 투자자가 투자위험과 청약내용을 인지하고 투자하도록 투자 적합성테스트\* 및 최소 청약기간(10일) 등 도입

\* 크라우드펀딩 투자에 따른 위험을 이해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온라인 테스트 → 영국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중

#### □ 「창업-성장-회수」의 선순환 시장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 '벤처지주회사 제도개선 방안('18.8월)', '제2벤처붐 확산 전략('19.3월)' 등을 통해 M&A 등 회수시장 활성화 대책 마련

-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요건 완화, 비계열사 주식 취득제한 폐지 등 행위제한 규제 대폭 완화(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제출, '18.11월)

\* 설립요건 완화(5천억원→3백억원), 비계열사 주식 취득 제한(5% 이내) 폐지 및 피인수기업의 대기업 계열편입 유예기간 확대(7년→10년) 등

- 벤처지주회사 제도개선 우선 입법과 세제혜택 부여, M&A 및 엔젤세컨더리 전용펀드 조성 등을 통한 회수·재투자 촉진

○ 기술혁신형 M&A 세제지원 일몰 연장('21년말까지) 및 사후관리 방법 개선\*(조특법 개정, '18.12월)

\* (현행) 주식 인수 후 5년 내 지분율 감소시 공제세액 전액 추징  
(개선) 지분율 요건(50% 이상) 유지시 감소한 지분율 만큼만 세액 추징

○ 기술탈취 방지 및 기술분쟁 조정제도 활성화

- 수위탁거래에서 기술 유용 행위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 발의(의원입법, '18.11월)
-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위 신고, 사실조사, 시정권고, 공표 등 행정조치 도입('18.12,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개정)

○ 신속한 기술탈취 사건 해결 추진체계(범부처·지역별) 구축

- '기술탈취 근절 TF\*'를 통해 개선과제 발굴, 피해사건을 공유함으로써 부처간 협력 강화(2차 '18.9월)

\* 중기부 주관, 중기부·공정위·경찰청·검찰청·산업부·특허청 등 6개 기관 참여

□ 미래 신성장 분야 효율적 지원시스템 구축

○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 및 「혁신성장 정책금융 실무협의회\*\*」 등 혁신성장 분야 지원체계 구축·운영(연중)

\* 4개 정부부처(금융위, 기재부, 중기부, 산업부) 차관급 및 11개 정책금융 기관(산은, 기은, 수은, 신·기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 협의회 소속 각 부처(과장급) 및 정책금융기관(임원급)으로 구성

- 정책금융기관 앞 혁신성장 공동기준을 활용한 여신상품 출시 및 지원 확대 유도('18년), '혁신성장 공동기준' 업데이트를 위해 전문 자문단 구성('19.7월)
- 혁신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성장지원펀드(3년간 8조원) 및 연계 대출 프로그램(4년간 20조원) 조성 및 운용
  - \* (성장지원펀드) '18년 2.94조원 결성 완료, '19년 2.43조원 결성 추진 중

#### □ 재기 지원을 통한 재도전 기회 제공

- 우수기술 보유 등 성실실패 기업인에 대한 맞춤형 보증 확대 및 제도개선
  - 신보 단일 채무자는 자체 “재도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실패사유 검증 및 기술력을 감안한 신규자금 지원 확대
    - \* 신보 보증지원 실적(억원) : ('17년) 129 → ('18년) 194 → ('19.6월) 98
  - 다중채무자는 신복위, 신보, 중진공의 정보공유 등 협력을 통한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공급을 강화
    - \* 신보 보증지원실적(억원) : ('17년) 37 → ('18년) 56 → ('19.6월) 29
  - 비금융 지원 강화를 위해 재도전 성공지원을 위한 컨설팅 제도개선('19.2월, 사전 컨설팅 → 사후 컨설팅 도입) 및 확대
    - \* 신보 지원실적(건) : ('17년) 15 → ('18년) 83 → ('19.6월) 16
- '19년 6월말 기준, 성장사다리펀드 회수자금 1,588억원을 재투자하여 9,867억원의 규모의 하위펀드\* 조성 추진 중
  - \* 성장지원펀드(6,110억원 규모), 기술금융펀드(1,250억원 규모) 등
  - '19년중 총 2,792억원을 재투자하여, 16,492억원 규모의 하위펀드를 조성할 예정

## 나. 인프라 금융 활성화

### ① 인프라 수주를 위한 금융지원 강화

- 다양한 금융상품을 활용\*하여 우리기업의 수주 지원, 수주지원협의체 지원\*\*을 통해 우리기업의 참여방안, 금융조달방안 자문

\*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2.0조원, SOC수출금융 2.5조원 지원

\*\* 해외인프라수주투자지원협의회, 한-베트남 경제부총리회의 등

- 국가신용도가 낮아(B+이하) 수은 일반계정으로 지원이 곤란한 초고위험국 인프라 수주지원을 위해 특별계정 설치\*(1조원 규모)

\* 2019년 경제정책방향, '해외수주 활력제고 방안'('19.2월 대경장), 특별계정 설치를 위한 수은법 시행령 개정 완료('19.5월)

- 해외 우량 발주처 대상 「사전 금융한도」\* 제공을 통해 국내기업에 대한 수주 지원 및 수출 촉진

\* 우량 발주처 대상으로 협의를 통해 FA [Framework Agreement (기본여신약정)] 체결 → 상대국이 지원요청 프로젝트를 추천하고, 조건 충족시 국내 금융기관의 지원 약속

\*\* 베트남 국영석유공사(PVN)와 20억불 FA 체결('19.6.21)  
인니 국영석유가스공사(Pertamina)와 15억불 FA 체결('19.7.2)

### ② 민간금융기관 해외진출 확대 유도

- 민간금융의 해외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대외채무보증, 우선상환제 등을 활용하여 민간금융기관 참여 유도

#### 국내 상업은행 앞 대외채무보증 및 우선상환제 지원실적

(백만불)

연 도	건 수	지원금액	참여 은행
2017	3건	187.5	국민(180)*, 하나(7.5)
2018	2건	50.0	신한(12), 하나(18), 우리(20)
합 계	5건	237.5	-

\* 우선상환제 지원 1건(국민 90) 포함

**< 지원실적 세부내역 >**

연도	사 업 명	수은지원 총액	국내 상업은행 앞 대외채무보증 제공액	
			합계	상세
2017	미국 Midstream 리파이낸싱	225백만불	90백만불	·국민 90백만불*
	중국 CMB Financial Leasing 컨테이너선 사업(5척)	222백만불	7.5백만불	·하나 7.5백만불
2018	터키 차나칼레 현수교 사업	600백만유로	25백만유로	·신한 10백만유로 ·하나 15백만유로
	우즈벡 GTL 천연액화가스설비 사업	600백만불	20백만불	·우리 20백만불

\* 대외채무보증 제공시 우선상환제 포함

**③ 사업개발 지원 강화**

- 투자개발형 사업 금융지원을 위해 정부·공공기관·민간이  
합동으로 조성하는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  
(3조원 규모)에 2천억원 투자 예정

\* '19년 경제정책방향, 해외수주 활력 제고방안('19.2월, 대외경제장관회의),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 조성방안('19.4월, 경제활력대책회의)

\*\* 1차 펀드 1.5조원 우선 조성 완료, 모펀드(0.6조) 운용사 선정 완료('19.6월)

**4. 핀테크 산업 발전 지원**

**가. 핀테크 발전방안 마련**

**①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시행 등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 및 시행('19.4.1)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
- '19.6월말 기준, 5차례에 걸쳐 37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 핀테크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쏘금융권·쏘부처 규제  
개선 제안 188건을 접수, 이 중 150건을 수용·개선 추진

## ② 블록체인 등 신기술과 금융의 융합 추진

- 금융권 공동 블록체인 컨소시엄(업권별) 운영\* 중

\* 은행('16.11), 금융투자업('16.12), 생명보험('17.9), 손해보험('18.10) 등

- 공동 추진사업으로 블록체인 활용한 “공동 공인인증 서비스”  
뱅크사인(은행권, '18.8), 체인아이디(금융투자업권, '17.10) 도입

-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블록체인 활용 금융서비스”의 테스트를 허용\*하고, 테스트 비용을 지원\*\*

\* (블록체인 관련) 샌드박스 5건 지정완료

지정 일자	신청 내용	
	기업명	서비스 내용
'19.4.17	디렉셔널	블록체인을 활용한 「P2P방식 주식대차」 중개 플랫폼을 통해 개인투자자에게 주식대차거래 기회 제공
'19.5.2	카사코리아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을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통한 「디지털 증권 방식」으로 투자자에게 발행·유통하는 테스트 서비스
	코스콤	「비상장 기업」의 주식거래 전산화 및 주주명부 블록체인화를 통해 개인간 비상장주식 거래를 지원하는 테스트 서비스
'19.6.26	아이콘루프	디지털 신원증명 플랫폼
	파운트	분산 ID 기반의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샌드박스, 지정대리인 및 위탁테스트)에 참여하는 핀테크 기업에 대한 테스트비용 지원(총 예산 40억원, 개별기업에는 테스트비용의 최대 75%를 1억원 한도내 지원)

## ③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서비스 제공(19.6월)

-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정보를 비식별 조치하여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교육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는 'CreDB' 구축

※ (참고) 신용정보원은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5,000여개의 금융회사로부터 약 4,000만 명의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관리중

- 수요자는 '원격분석 시스템'을 통해 직접 CreDB를 분석하고 그 결과물을 반출하여 활용

#### ④ 핀테크 지원센터의 기능강화 등 종합적인 핀테크 지원 체계 구축

- 핀테크 지원센터 법인화('18.1) 후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핀테크 예산 사업\*을 통한 종합 육성·지원 체계 마련

\* 핀테크 지원센터를 핀테크 예산 보조사업자(보조금 74.96억원) 선정('19.1)·집행  
\* (주요사업) 테스트베드 비용지원(40억),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19억), 국민참여 핀테크 행사(9억) 등

### 나.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 ① 해외 핀테크 데모데이 및 IR 행사

-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국·베트남 핀테크 기업과 핀테크 데모데이 개최('18.10.31)
- 벨기에 대사관과 협업하여 한국 - 벨기에 핀테크 데모데이 및 유럽진출 세미나 개최('19.6.19)
- 스위스 플랫폼 기업인 Avaloq Ventures와 협업하여 핀테크 기업 해외진출 세미나 및 IR 행사('19.7.23)

#### ② 해외진출 지원방안 마련

- 금융위·핀테크지원센터는 해외진출을 원하는 핀테크 기업에게 법률, 특허, 회계 등 해외진출 전문 컨설팅 제공
  - 컨설팅 필요 핀테크기업 선정('19.6) 후 컨설팅 실시(~'19.12)
-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홍콩투자청 공동으로 홍콩 진출 세미나 개최('19.7.15.)
  - 홍콩의 핀테크 산업 환경과 지원프로그램 및 핀테크의 미래에 대한 세미나를 통한 해외진출 지원

## 5. 외환제도 개선

### 가. 외환거래의 편의성 제고

□ 외환거래 부담 완화 및 기업의 대외거래 편의제고를 위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19.1월, 19.5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 ① 외환거래시 서류제출 방식 개선 등 부담완화

- 해외로 자금을 송금하거나, 해외로부터 송금 받을 경우,  
전자적 방법(FAX, PDF 등)을 통한 서류 제출 허용('19.1월)
- 거래사유 등 증빙이 필요없는 송금·수금액, 제3자를  
통한 송금시 신고가 필요없는 송금 금액 완화(건당 3천불  
→ 5천불)('19.5월)

#### ② 사전 신고의무 완화 등 기업의 대외거래 편의 제고

- 거주자의 해외 부동산 소액 임차(보증금 1만불 이하), 정형  
화된 제3자 지급 등 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 면제('19.1월)
- 해외부동산 취득시, 계약금 송금 금액한도(20만불) 폐지  
('19.5월)
  - \* 다만, 탈세·재산도피 방지를 위해 비율한도(취득금액10%)는 존치
- 지급수단의 수입 사실 인지가 어려운 경우\*, 국외로  
부터 임의 상계된 수출대금 잔액을 수령하는 경우 사후  
보고(30일 이내) 전환('19.1월)
  - \* (예) 국제우편물 등 휴대 수입 이외의 방법을 통한 수입
- 거주자가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이 자체이익유보금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증액투자하는 경우 사전신고 의무를  
사후보고로 전환('19.5월)

- 해외직접투자 이후 사후관리를 위한 서류(사업실적보고서, 감사보고서 등) 제출\* 부담 완화

	현 행	개 선
100~200만불 투자 기업	사업실적보고서·감사보고서	투자현황표
50~100만불 투자 기업	투자현황표	제출서류 없음

## 나. 소액 해외송금업 활성화

- 비은행 금융기관의 소액 해외송금 허용 등 금융회사간 업무칸막이 완화로 외환산업의 경쟁적 환경 조성('19.1월, 19.5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 그간 은행 등에만 허용되던 해외 송금업무를 소액에 대해 증권사, 카드사에 허용('19.1월)하고, 송금한도를 상향조정 (건당 3천불 → 5천불, 연간 3만불 → 5만불)('19.5월)
    -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에게도 해외송금·수금 업무 허용('19.5월)
    - 외국인 거주자가 국내에서 취득한 보수 등을 우체국을 통해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19.5월)
  - 금융인프라가 취약한 농어촌 주민 등의 해외 송금 편의를 위해 단위 농협·수협의 송금한도 상향(연간 3만불 → 5만불) ('19.1월) 및 수금업무도 허용('19.5월)
  - 소액 해외송금업체가 고객으로부터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받아 해외로 송금하는 영업방식 허용('19.5월)

1. 금융인프라의 국제정합성 제고

가. 금융규제의 국제정합성 제고

□ 바젤Ⅲ 규제의 단계적 정착 지원

- 바젤위원회가 권고한 거래익스포저 규제를 행정지도를 통해 시범 도입('19.3월)

- \* 거래상대방 부도로 인한 은행의 대규모 손실발생 방지를 위해 단일 거래상대방(거래상대방 그룹)에 대한 익스포저를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

- 은행에 대한 자본보전완충자본\*, 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 도입('19.1월)

- \* 2.5%를 완충자본으로 추가적립하고 위키시 소진되면 재적립하는 완충자본 '16년부터 매년 0.625%p씩 적립비율을 상향조정하여 '19년부터 2.5% 적용

- \*\* 스트레스 상황에서 30일동안의 순현금유출액 대비 고유동성자산의 비율 '15년에 60%로 도입하고 매년 10%p씩 상향조정하여 '19년부터 100% 적용

- BCBS가 결정한 '바젤Ⅲ 기준 자본규제 개편안'(BIS비율 산출 방법 개편안)도입을 위해 은행 등에 공개협의안 발표('19.4월)

□ 장외파생상품 위험관리체계 구축

-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종합적인 거래정보 파악을 위해 거래정보저장소(TR)의 국내 도입근거 마련 및 거래정보 보고의무화를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19.1월)

- \* '19.5월, “혁신성장과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을 통해 TR 운영 개시 시점을 '20.10월로 발표

## 나.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국제정합성 제고

### ① 자금세탁방지제도 선진화

- 전자금융업자(120여개사)·대부업자(자산 500억 이상/80여개사)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부과('19.4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
- 금융회사 등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CTR(고액현금 거래보고) 기준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조정('19.4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

### ②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실효성 제고

-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를 위해 금융회사 등의 내부통제시스템\* 강화('19.4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
  - \* 금융거래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도에 따라 관리수준을 차등화 하는 업무체계의 구축 및 운영,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와 독립된 부서 등에서 자금세탁방지 업무수행의 적절성 등을 검토·평가
-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 관리 수준에 기반한 위험기반감독체계를 마련('18년말~)
-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관리·감독 강화와 실질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유권해석 사례집 발간('18.2월)

### ③ 국제협력·공조 강화

- 자금세탁범죄의 범국가간 공조와 대응을 위해 다른 국가와 금융정보교환 MOU 체결 확대('17년 4건, '18년 2건)
- FATF TREIN(국제 자금세탁방지 교육·연구기관)을 통해 후발국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교육을 지속 추진중

\* FATF TREIN은 '16.9월 개원 이후 총 22회 / 886명 교육('19.7월 현재)

## 2. 금융감독 시스템 개선

### 가. 검사·제재개혁 추진

□ 금융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불합리한 검사·제재 관행을 지속 발굴함으로써 검사·제재개혁을 상시화

#### ○ 제재심의위원회 대심(對審)방식 정착

※ 제재심은 금감원의 금융회사 검사결과 제재에 관한 금감원장의 자문기구, 심의의 공정성·전문성을 위해 외부전문가를 위원에 위촉·구성

- 검사및제재규정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18.4월부터 모든 진술안건에 대해 제재심 대심방식 심의\*를 시행

\* 제재대상자와 금융감독원 검사부서가 동석하여 동등하게 진술 기회를 갖고, 제재심의 위원이 양 당사자에게 질의·답변(반박/재반박)하는 심의방식

- 또한 제재대상자가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안전 사전 열람범위를 부의예정안 전체(조치수준, 양정기준 등)로 확대하여 제재대상자의 절차적 방어권 강화

#### ○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시행

※ 금감원이 점진적으로 축소·폐지키로 했던 종합검사를 다시 시행하는 데 대한 각계의 우려에 따라 **중전의 저인망식 종합검사와 차별화**되는 종합검사 시행방안 마련('19.4월)

- **(대상선정기준 공개)** 금융권 의견수렴을 거쳐 종합검사 대상 선정기준(세부지표·배점 등)을 확정하고 대외 공개

- **(핵심부문 중심검사)** 금융업권별 핵심부문을 사전에 선정·공개  
→ 저인망식 검사가 아닌 **핵심부문 위주의 검사** 실시

- **(수검부담 완화)** 종합검사 등으로 금융회사 수검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부담완화방안\*** 병행 실시

\* ①종합검사 실시 전·후 3개월 부문검사 미실시, ②사전 검사요구자료 최소화, ③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조치 적극 활용 등

- (검사품질관리) 모든 종합검사 실시 후 '품질관리'를 엄격히 실시하고, 외부기관을 통한 독립적 점검도 병행

## 나. 금융소비자 보호시스템 강화

### ① 체계적이고 일관된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추진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노력 지속

- 동 법안 정무위 법안소위 상정·논의 지원('17.11.30., 12.6., 12.21., '18.11.23., '19.3.18.) 논의 지원
- 정무위 소속 의원들과 행정실 등에 대해 동 법안 내용 및 입법 필요성 등 지속 설명('17.10월~'19.6월, 81차례)

### ② 금융소비자 정책 추진

- '국민 체감형 과제' 발굴을 위해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금융소비자 T/F' 구성·운영('18.12월~'19.3월)
  - T/F를 통해 Bottom-up 방식으로 소비자 전문가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 마련('19.4월)
- 반기\*마다 정기적으로 '금융교육협의회\*\*' 개최

\* '07.11월, '15.10월 보도자료 배포시 원칙적으로 반기마다 1회 개최기로 발표

\*\* 실태조사 등을 통한 금융교육 계획 수립 및 기관간 조율 등 금융교육 전반을 총괄하기 위해 정부부처, 공공기관, 금융협회, 학계 등 25개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

- '18. 12월,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교육협의회 개최, '18년 금융교육 추진현황 및 '19년 금융교육 추진계획 논의
- '19.7월, '19년 상반기 금융교육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금융교육협의회 개최(서면)

### 3. 외국계 금융회사 지원체계 개선

#### 가. 현장 중심의 금융 규제개선 지속 추진

- 금융업권별 금융현장점검반 합동점검(월1회)이나 개별 점검을 통해 금융회사의 애로사항 청취 및 제도개선 노력
  - '17.8월~'19.7월 현재까지 20개 외국계 금융회사에 총 25회에 걸쳐 62건의 건의사항을 발굴하고 이중 18건 개선
- 외국계 금융회사의 건의·제안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동일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 점검 및 개선
  - '18.8월~'19.7월간 외국계 금융회사 CEO 간담회를 총 4회 개최하여 24개\*의 건의·제안사항 접수
    - \* 중동계 은행 CEO간담회('18.8월, 3건) 쏘권역 CEO간담회('18.9월, 13건), 자산운용사 사무소 대표 간담회('18.12월, 4건), '18년 중 신규진입 사무소장 간담회('19.4월, 4건)
    - '19.7월 현재 24건 모두 소관부서를 통해 검토의견을 회신, 타 기관 소관 업무일 경우 소관부처를 안내
    - 불수용 의견으로 회신한 경우, 지속 관리하여 외국계 금융회사가 체감 가능한 애로해소로 이어지도록 노력

#### 나. 외국계 금융사 영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 완화

- ①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차단장치 개선('19.5월 개선방안 발표)
  - 법령에서 규제대상과 형식을 직접 규정하는 방식을 벗어나, 법령에는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필수원칙만 정하고, 세부 사항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하는 방식으로 개선
    - \* 현행 임직원 겸직제한 등 인적교류 금지, 사무공간 분리 등 물리적 차단 의무와 같은 형식적 규제는 법령에서 폐지

- 계열회사 등과의 임직원 겸직제한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수준으로 완화

\* 열거된 경우에 한해 겸직 가능 → 이해상충 우려가 적은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 겸직승인 및 보고 절차 등을 통해 가능

## ② 금융투자업자 업무위탁 규제 개선('19.5월 개선방안 발표)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업무를 제외한 핵심업무\*도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가·등록을 받은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개선

\* (현행) 계약의 체결·해지업무 등 핵심업무는 업무위탁을 전면금지

- 위탁자 동의를 요건으로 재위탁을 원칙적으로 허용
- 금융투자업자도 타 금융업권과 동일하게 단순 정보처리 업무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위탁이 가능하도록 개선

## ③ 겸영·부수업무 규제 개선('19.5월 개선방안 발표)

- 겸영·부수업무에 대한 사전보고 원칙을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하여 신속한 업무추진을 지원

## ④ 약관 제개정시 원칙적으로 '사전신고 → 사후보고'로 전환하는 내용의 은행법 등 금융법 개정

- 은행법, 저축은행법, 자본시장법, 여신전문금융법 개정 ('18.12월) → 관련 시행령 개정 추진 중

## ⑤ 직접 판매를 하지 않는 자산운용사에 대하여 자금세탁 방지제도 이행평가방법 등 변경

- '18년도 자금세탁방지제도이행 종합평가 수행('18.10월)시 자산운용사를 평가대상에서 제외

1. 외국계 금융회사 집적 촉진

가. 외국계 금융회사 경영·생활환경 개선

□ 출입국 우대카드 이용 안내 및 홍보

- 외국인 금융전문인력의 출입국 관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상시)

\* '18.8월~'19.7월중 5장 신규 발급, '19.7.10 현재 출입국 우대카드 보유자 27명

- 금융중심지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출입국 우대카드 관련  
자료를 게시, 신규 진입사에 대해서는 안내장 발송(수시)

□ 뉴스레터(영문·중문) 제작 및 발송(매월)

- 국내금융 주요 이슈, 금융법규 제·개정 내용, 금융중심지  
지원센터 주요업무, 생활정보 등을 매월 뉴스레터로 제공

□ (서울시) 외국인 대상 생활 및 전문상담(법률, 노무, 부동산,  
심리상담 등) 제공<sup>①</sup>, 한국어교실 및 운전면허교실 등 운영<sup>②</sup>

① 13개 언어 지원, 상담실적 : '18년 35,875건, '19년 17,764건

② 한국어교실 : 기초반~TOPIC 대비반 등 연간 총 100여개반 운영

운전면허교실 : 연간 총5기 운영(68명 이수)

생활정보교실 : 외국인주민 재난안전 기본교육 및 체험기회 제공(총5회)

- 외국인주민 서울생활 살피미 운영

\* 22개국 50명 활동 : 서울생활의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 건의 및 제안 등

-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정보제공, 투자신고·법인  
설립·정착서비스 등 종합지원 강화(인베스트서울센터)

\* 인베스트서울센터(ISC) 조성 : 추경반영('19.6월) ⇒ 리모델링 공사('19.12월)

□ (부산시) 외국인 학교 5개소 운영, 국제교류재단의 영어 FM방송국 내실 운영 등 외국인 교육환경 조성

\* '09. 2. 27 개국, 1일 24시간 송출, 자체제작율 50% 이상

- 외국인 콜센터(법률, 임금, 고용, 출입국 등 각종 상담 제공), 생활 가이드북 「Life in Busan」 및 소식지 「Busan Beat」 웹진 발간, 한국어강좌\* 운영 등 외국인 주민 생활편의 지원 확대

\* 정규강좌 연 2회(상/하반기, 10개반), 특별강좌 연 1회 운영

- 외국인주민 지원기관\*간 정보공유, 외국인주민 대표자 회의 구성\*\* 등 외국인 주민 소통체계 및 네트워크 구축

\* 부산시, 부산국제교류재단, 부산시외국인근로자센터 등 5개기관

\*\* '19.4.12 위촉식 개최, 7월 분과별 회의 개최

## 나. 지역별 특화전략 수립 및 상호 보완

### < 서울 금융중심지 >

#### ① 핀테크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핀테크 생태계 육성

- 핀테크 스타트업 전문 육성기관으로 제1 핀테크랩을 설립 하여 총 14개 기업 입주('18.4월)

- 위치·규모 :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 별관 2층(592m <sup>2</sup> )
- 주요시설 : 창업육성공간, 공동창업실, 핀테크지원센터 등
- 입주기업 : 총 14개사(국내 12개, 해외 2개사)
- 지원내용 : 핀테크에 특화된 전문창업보육서비스 제공

#### ※ 제1핀테크랩 '18년 운영 주요 성과

항 목	세부항목	성 과
투자유치성과	투자유치금액	51억
사업성과	MOU체결	11건
일자리 창출	고용증가	88명 → 149명 (69% 증)

- 여의도 금융중심지에 제2의 핀테크랩 조성, 총 14개 기업이 입주하여 기존 금융 인프라와 시너지 효과 창출('19.7월)

- 위치·규모 : 위워크 여의도역점 6층(1,912㎡)
- 입주기업 : 총 14개(국내 11개, 해외 3개사)
- 지원내용 : 입주 공간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 제공(최대2년)

- 서울 핀테크 랩 확장 추진('19.11월 예정)

- 위치·규모 : 위워크 여의도역점 총 3개층(5,736㎡) 확대
- 입주기업 : 총 50여개 핀테크 기업 추가 입주

## ② 핀테크 허브 도시와 협력 체계 구축

- 서울시 핀테크랩과 룩셈부르크 하우스 오브 핀테크(룩셈부르크 민·관 협력 핀테크 육성단체)간 MOU 체결('18.7.2)
- 프로스트&설리번과 서울 소재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 및 투자유치 협력을 위한 MOU 체결('18.7.10)

## < 부산 금융중심지 >

### ① 해양금융종합센터 활성화

- 설립이후 총 68.5조원 금융지원('19.6월말 기준)
  - \* 대출(투자포함) 35조원, 보증 33.5조원
- 공동지원 : 삼성·현대重 LNG 8척 수주 등 총 16건, 5.5조원
- 조선해양사업정보센터 : 해양플랜트 등 계약금액 U\$3억 이상 프로젝트 사업성평가 2건

- (설립경위) 산은·무보·수은 등의 선박금융 관련 조직·인력을 부산으로 이전하여 「해양금융 종합센터」로 통합 결정('13.8)
  - '14.9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업무개시
- (사업내용) 해양플랜트.선박 관련 금융지원, 중소 조선.해운업체 지원 등

## ②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및 운영을 통한 사업역량 강화

- (설립경위)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 해양보증보험, 한국선박해양, 해운거래정보센터를 통합하여 부산에 설립('18.7월)
- (사업내용) 선박, 터미널 투자·보증, 채권매입·중개, 해운거래시장 확대, 해운·항만산업 성장지원 등
- (사업규모) 자본금 약 5조원('19.7월 현재)
  - 납입자본금 3.3조원
  - \* 정부출자 1.48, 승계기관 통합 1.35, 공사채발행 0.5조
- (추진실적) 총 32개 선사, 약 2.7조원 지원
  - 선박확보 및 경영안정 지원
  - 시장수요 대응 및 기존 지원분야 확대를 위한 상품 다각화 추진

## 다. 국부펀드를 활용한 외국계 금융회사 진입 유도

- KIC는 국내진출 해외자산운용사 인센티브 제도를 '16년 최초로 도입한 이후 최근 1년간 총 2개사에 자산운용 위탁
  - (해외주식) '19.5월 운용사 1개사 위탁
  - (해외채권) '18.10월 운용사 1개사 위탁
- ② 채권, 주식 등을 위한 외부자산운용사 선정 시 '국내 금융산업 발전 기여도' 가산점 제도를 '17.4월 도입·지속 운영
  - (적용대상) 국내에 법인을 설립한 후 지분 30%이상 소유하고 금융위로부터 관련 인허가 및 등록을 득한 기관
  - (가점기준) 내국인 고용실적, 정부에 납부한 세금

## 라. 금융중심지 홍보 강화

-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해외 IR 개최
  - (서울시) 시드니('18.10월), 에든버러('19.4월), 런던('19.5월)
    - 국내 미진입 자산운용사 방문 및 정보 제공, 국내 진입 금융회사 본점 방문 및 애로사항 청취, 국내 진입 고려 중인 핀테크 업체 면담 등 전방위 IR 실시
    - IR 개최에 앞서 참석 신청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질의·건의사항을 취합하고, 이를 반영한 맞춤형 IR 실시
  - (부산시) 카자흐스탄 누르술탄, 중국 칭다오('19.7월)
- 해양금융 중심지로서 부산시를 홍보하기 위해 부산시와 지원센터 공동으로 「2019 부산 해양금융 컨벤션」 개최\*('19.5월)
  - \* 국내외 금융회사, 조선·해운업계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하여 '친환경 해양시장과 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 진행, 해양금융 규제 등 쟁점 토론
  - 또한, 각종 금융분야 컨퍼런스, 금융포럼 등을 개최하여 부산 금융중심지 홍보 강화
    - \* ('18.8월) 한중 금융협력포럼 ('18.9월) 글로벌금융포럼 ('18.10월) 세계지식포럼 ('18.11월) 선박금융포럼 ('19.2월) 부산금융중심지 지정 10주년 세미나 ('19.4월) 부산금융중심지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19.5월) 세계선물업협회 (FIA) 포럼, 부산 국제금융컨퍼런스 ('19.6월) 한국금융학회 국제학술대회, 2019 주택금융 컨퍼런스 ('19.7월) 국제 전자상거래 학술대회
-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 우수인력 채용 지원 및 구직자에게 채용 기회 제공을 위해 서울시·코트라 등과 공동으로 「외국인 투자기업 채용박람회」 개최('19.6월)

## 2. 회계 등 금융연관산업 발전 지원

- 외부감사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법령 등을 정비\*하고 ('18.10월), 회계감독 선진화 종합대책 마련('19.6월)

\* 외부감사법 및 하위규정 전부개정, 공인회계사법·자본시장법 일부개정 등

- (제도개선)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표준감사시간제 도입, 회계법인의 비감사용역 제공금지 범위 확대, 회계부정 과징금 부과금액 상한폐지 등

- 또한 회계감사기준 개정을 통해 상장사에 핵심감사제\*(KAM : Key Audit Matters)를 단계적으로 도입

\* 기업의 중요 경영리스크를 핵심감사항목으로 선정하고, 해당 항목에 대한 감사결과를 감사보고서에 구체적으로 작성

- (감독선진화) 상장법인 회계감독주기 단축을 위해 기업 재무제표 심사제도\*를 도입하고('18.10월)

\* 기업의 공시된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회계기준 위반이 있는 경우에 위반이 중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재하지 않고 재무제표 수정권고로 종결

- 외부감사인 감독 및 기업의 회계처리역량 지원을 강화하는 등 회계감독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19.6월)

## 3. 국제 금융전문 인력 양성

- 부산 금융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기관으로 부산대와 한국해양대를 선정, 해양·파생 특화 금융석사 과정 개설('18.9월)

\* (제1기, '18.9월) 부산대 20명/정원25명, 한국해양대 13명/정원15명  
(제2기, '19.3월) 부산대 24명/정원25명, 한국해양대 15명/정원15명

### < 부산 금융전문인력 양성과정 설립 추진경과 >

- (개요) 부산 해양.파생특화 금융중심지 육성 지원을 위해 해양.파생 금융 특화 석사과정에 대한 보조사업 실시
  - \* 금융위-부산시가 공동으로 국비:시비를 1:1 매칭하여 보조금으로 교육시설, 교육과정 운영비 등 지원 → 4년간('17년~'20년) 80억원
- (추진경과)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산 금융전문인력 양성과정 개설 기본계획안 마련('17.4월)
  - 운영기관 선정 심사기준 마련('17.7월) 및 심사단 심사('17.8월)
  - 금추위 심의 및 금융위 보고를 통해 부산대-한국해양대 확정('17.9월)
  - 금융위, 부산시, 부산대-한국해양대간 업무협약 체결('17.10월)
  - 부산대 금융대학원, 한국해양대 해양금융대학원 신설('18.4월)

### □ (서울시) 핀테크 아카데미를 통한 핀테크 전문인재 양성

- 핀테크아카데미 과정을 개설('18.2월)하여 금융·IT분야 양방면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 \* (1기 과정) 운영기간: '18.2월~6월 (2기 과정) 운영기간: '18.8월~12월
- 전문 금융교육 연수기관을 선발하여 실무 중심, 최근 핀테크 업계 동향을 반영한 교육과정 구성
  - \* '18년 교육과정 운영기관: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
  - \*\* '19년 교육과정 구성: 빅데이터 분석, 블록체인, 빅데이터시 활용 등
- 핀테크 분야별 트랙을 구분하여 수요자의 목적에 부합하고 취·창업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
  - \* (트랙1) 은행·카드·여신전문업 등, (트랙2) 금융투자업, (트랙3) 보험업
- 급증하는 핀테크 분야 교육수요를 반영하여 모집인원 확대
  - \* '18년 1·2기 모집인원: 각 30명 총 60명, '19년 3·4기 모집인원: 각 50명, 총 100명

< '19년 3·4기 서울 핀테크 아카데미 개요 >

- 운영기관 :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
- 참여기관 : 서울시, 금감원, 금투협회, 금융연수원, 금융보안원, 보험연수원 등
- 교육대상 : 핀테크 분야에 관심 있는 직장인 학생, 예비창업자 등
- 교육인원 : 100명 내외
  - 1·2기 교육생 60명 배출, '18.2월~6월
  - 3기 교육생 55명 모집('18.5월), 4기 교육생 50명 모집 예정('18.8월)
- 교육내용 : 전공교육(은행·카드·여전, 금융투자, 보험) 및 핀테크 공통교육
- 향후일정 : 4기 교육생 모집 및 운영('19.8월~'19.11월)

□ (부산시) 실무 중심 일반인 대상 금융교육 추진

- 부산국제금융연수원 운영으로 부산지역의 특화된 전문인력 양성, 금융기업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 \* '18.8월~'19.7월 146개 과정, 4,783명 교육
- BIFC 금융강좌 운영으로 부산시민의 금융산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자산관리 역량을 강화
  - \* '18.8월~'19.7월 26회 1,400명 교육
- FATF TREIN(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교육연구원)을 통해, FATF 회원국·개도국 공무원, 금융회사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교육 프로그램 운영
  - \* '18.8월~'19.7월 6개 과정, 253명 교육

## IV. 향후 금융중심지 정책 추진방향

### 1. 정책 평가

- '09년 서울·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한 이후, 10여년간의 다양한 정책추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러운 성과를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
  - 전세계적으로 금융중심지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특히 아시아권내 중국 주요 금융도시의 급성장, 일본의 금융강국 추진전략 등으로 우리 금융중심지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가일층 노력이 필요한 상황

### 2. 향후 계획

- 우리 현실과 역량에 기반한 특화 분야를 선도산업으로 육성하고, 이를 위해 지원역량을 전략적으로 집중
  - ① 국민연금 등을 기반으로 자산운용업을 집중 육성하는 한편,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서 핀테크 생태계를 활성화
  - ② 정부와 지자체, 관련 업계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여 규제혁신, 세제인센티브 등 경영·생활환경 개선 추진
  - ③ 정부의 금융중심지 육성 의지와 정책노력 홍보, 서울과 부산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노력 지속
- ⇒ 이를 위해, 최근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전략방향 설정 및 세부과제 마련을 위한 “제5차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20년~’22년)” 수립 추진